

보도

2026.6.25.(목) 석간

배포

2026.6.24.(수)

## 주차비, 출장비도 이자였어?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! - 불법 차량담보대출 실태 및 소비자 유의사항 -

### ■ 소비자경보 2026 - 19호

등급	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#f08080; padding: 2px;">주의</span> 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#f0e68c; padding: 2px;">경고</span> 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#f08080; padding: 2px;">위험</span>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

## I 배경

-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,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다수 접수(총 12건)되고 있습니다.

※ ('26.1월) 1건 → (2월) 0건 → (3월) 2건 → (4월) 1건 → (5월) 4건 → (6월) 4건

  - 채무자에게 출장비·주차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요구하거나, 담보물(차량)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히며,
  -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·리스회사에 알려 '고소당하게 하겠다'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이와 같이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,

  - 금융소비자께서는 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다음의 **유의사항** 및 **대응요령**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

### 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

- ① **주차비, 출장비,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됨**을 명심!
- ② 특히 **리스·할부차량은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**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!
- ③ **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** 경우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**금융감독원**이나 **수사기관에 적극 신고!**

※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들에 대해서는 **채무자대리인 선임, 무효확인서 발급** 등 조치함

## II 범죄 수법 및 피해자 분석

### 1 범죄 수법

① **(차량 인수)**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

- 할부·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경우도 존재\*  담보 제공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
\* **(할부차량)** 차량이 피해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·인도하는 경우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  
**(리스차량)** 리스회사의 소유이므로 담보제공 불가

② **(고금리 수취)** 주차비, 출장비,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부대비용을 청구하여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금리를 수취\*

\* 주차비, 출장비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해당 (「대부업법」 제8조 ②항)

각종 부대비용 청구 사례 (1)

대부금액	원금	이자	수수료
1,167			
분할상환일	납입 이자 원금 중액		
상환 (변제) 방법			
1.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원금(원금)을 당사자가 약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. 2. 대출금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다음에 기재된 만기일은 최장 3개월로 한다. 3. 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대출금 상환하지는 물론 차량매매로 대출금 유해종산 및 부동산으로 증당 될 때까지도 한다.			
부대비용의 내용 및 금액			주차비 월 300000

각종 부대비용 청구 사례 (2)

맡기고 찾으실때 운송료 11만원 있으셔서, 그 비용 차감후 입금해드립니다.

88,000원은 출장비 넣어주신거구요. 11:43

77,000원 주차료는 매월 25일 대출 원리금 내실때 같이 정산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11:44

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
대출 관련 아셔야할 부분입니다

**※ 대출 시 납부하시는 비용!**

1. 실내주차장으로의 **운송료** 배기량별 7~12만원, 무가세별도)

**※ 대출 후 매월 납부하시는 비용!**

1. 대출원금의 10%상환 (10개월 원금균등상환 방식)  
 2.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 월 1.6% (연 19.2%)  
 3. 실내주차장 **주차료** 배기량별 3~10만원, 무가세별도)

**※ 상환 시 납부하시는 비용!**

1. 실내주차장에서 사무실로의 **운송료**

③ **(불법 추심)**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, 추심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“할부금융·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”며 협박\*하는 경우도 존재

\* 채무자에 대한 협박, 공포심·불안감 유발,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 (「채권추심법」 제9조, 제11조 등)

4 (기타 담보를 유용 등)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 운행하여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고, 과태료·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

주정차 위반 과태료 발생 사례

통행료 발생 사례

위반내용	주 - 정차위반	2026/03/27	남해제2지선	마산 (도공)	장 (도)
과 태 료	40,000 원 (의견진술기간 자진 납부시 20%감정 32,000 원)	2026/03/05	부산대구선	밀양 (민자)	수 (민)
가상계좌은행					

차량담보대출 구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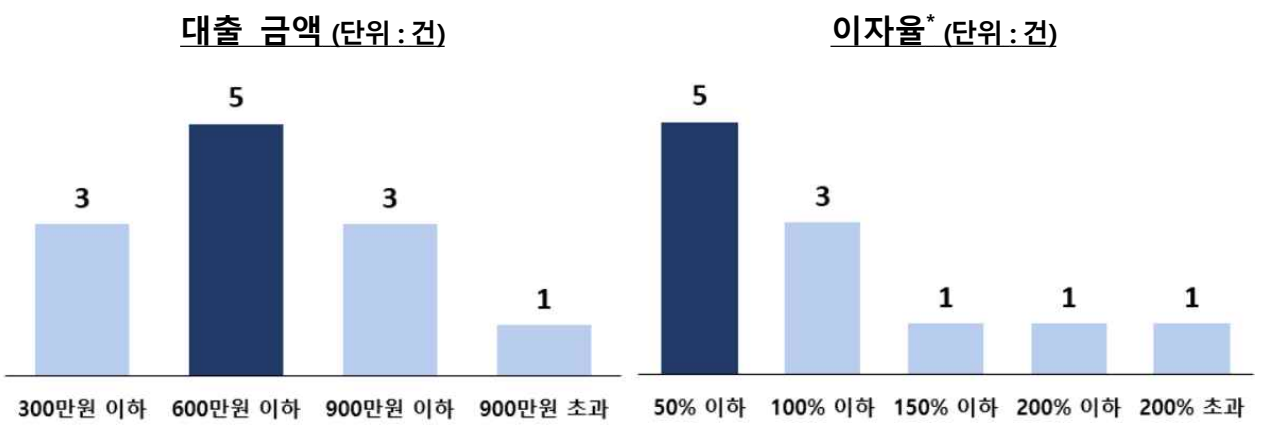


⇒ 외형상 일반적인 '차량담보대출'로 보이지만, 실질은 **고금리 불법 사금융**에 해당

2 피해자 분석

□ (대출 현황) 대출금액 250만원 ~ 3,000만원, 이자율\* 27% ~ 22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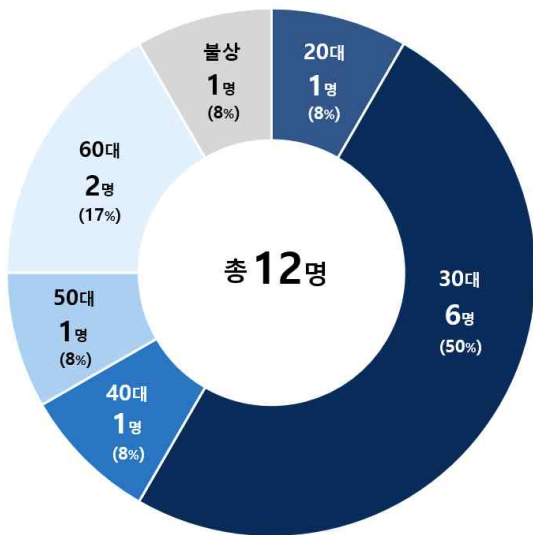
\* 선공제 및 출장비·주차비 등의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하여 산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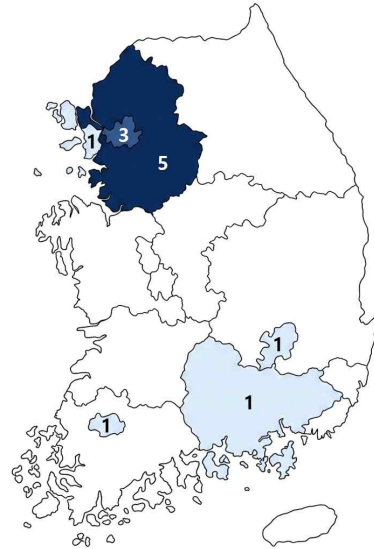
\*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1건 제외

- **(연령 및 거주지)** 피해자 **연령**은 **30대(6명)**가 가장 많은 가운데, 60대(2명), 20·40·50대(각 1명) 등 전 연령대에 고루 분포
- **거주지**는 경기(5명)·서울(3명)·인천(1명) 등 **수도권**이 대부분이나, 대구·경남·광주(각 1명) 등에도 존재

피해자 연령대



피해자 거주 지역 (단위:명)



### Ⅲ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① **주차비, 출장비,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됨을 명심!**

- 대부업자가 약정이자와 별개로 요구하는 **주차비, 출장비, 수수료** 등은 **모두 이자에 포함됩니다.**
- **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%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며, 연 이자율 60% 초과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입니다.**

② 특히 **리스·할부 차량은** 대출 시 **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!**

- **(채무자)** 적법한 권한 없이 **리스·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·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**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**(대부업자)** 리스·할부차량을 담보로 수취한 경우 **형사처벌 대상**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**불법대부행위를 즉시 중단**하시기 바랍니다.

③ **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!**

- 불법 차량담보대출과 같은 변종 불법사금융을 요구받으신 경우,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담자\*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\* 불법사금융 피해내역 정리, 증빙자료 준비, 신고서 작성과 채무조정, 고용·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

**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**

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(☎1332)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,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(☎1397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	책임자	팀 장	김민형	(02-3145-8280)
		담당자	선 임	강유진	(02-3145-8287)
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3팀	책임자	팀 장	민혁진	(02-3145-8277)
		담당자	조사역	최은영	(02-3145-8282)
			조사역	유영재	(02-3145-8281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**1 주차요금·출장비 등 명목 불문 모두 이자입니다!**

승용차를 담보로 2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월 4만 원, 담보차량 주차요금으로 월 35만 원, 출장비 및 이동비로 8만 원 합계 47만 원(월 이자율 18.8%, 연 환산이율 225.6%)을 제외한 203만 원을 대부

(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, 2024고정49)

☞ 출장비, 주차비를 모두 이자로 산정하여 이자율을 계산한 사례

**2 리스차량 담보 제공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!**

피고인(채무자)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는 것으로 피고인은 계약상 위탁관계에 따라 피해자(리스회사) 소유의 리스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,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행위

(서울동부지방법원, 2014고단3324)

☞ 채무자가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인도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판단한 사례

**3 할부차량 담보 제공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!**

피고인(채무자)이 피해자(할부금융회사)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도 아니하고 등록명의를 이전하지도 아니한 채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C(대부업자)에게 넘겨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목적물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는바, 이는 자동차 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

(서울중앙지방법원, 2016노577)

☞ 채무자가 할부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인도한 경우 형법상 권리행사방해로 판단한 사례